

교원연봉제 급여규정

개정 2019.01.22. 개정 2019.04.17. 개정 2020.02.27. 개정 2020.07.16. 개정 2025.03.24.
개정 2026.02.09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능력주의 급여제도를 통한 동기부여 및 교육생산성 향상, 대학 경쟁력 확보와 선진 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봉제 급여에 관한 적용, 기준,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

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연봉제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.
- ② 기본연봉이라 함은 해당직급을 반영하여 계산한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.
- ③ 성과연봉이라 함은 전년도 업적평가등급에 의거 반영되는 성과급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.
- ④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하여 12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- ⑤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하여 12 로 나눈 금액을 해당 월,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 초임 연봉이라 함은 신규임용 교원에 대해 직급별 정해진 연봉액을 말한다.

제2장 연 봉

제4조 (연봉)

- ①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, 성과연봉, 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.
- ② 연봉은 매년 결정하며 전(前)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[별표1] 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의거, 반누적 계산방식을 적용한다.
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 ④항에 의한 제외자는 A등급을 적용하며, 그 외의 제외자는 B등급을 적용한다. 다만, 각 등급별 대상인원 산정시 제외자를 평정인원에는 포함하고, A등급 대상 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.

<개정 2014.12.16., 2019.04.17., 2026.02.09.>

제5조 (기본연봉)

- ① 재직종인자의 최초 기본연봉은 기본급여, 정근수당가산금, 정근수당, 학사지도비, 효도휴가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4.02.25.><개정 2014.03.19.>
- ②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 책정은 대상자의 학위, 경력, 자격,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.
- ③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연봉의 20% 이내를 합산하고 가산인상률은 대학의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- ④ 연봉계약기간 중 임용사항이 변동되어 연봉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변경 체결할 수 있다.
- ⑤ 교원 각자의 연봉 계약서는 개인별로 체결한다.

제6조 (성과연봉)

- ① 성과연봉은 연구비(50%) 연구보조비, 특별상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한다.
- ② 재직종인 교원 및 신규임용교원의 기초 성과연봉은 직급별로 [별표 2 성과연봉 기초 기준금액표]계산한다.
- ③ 성과연봉의 계산은 전체교원의 [별표 1 성과급 지급 기준표], [별표 3 성과급 지급 기준금액표]로 계산한다.<개정 2014.02.25.>

제7조 (기타수당)

연봉이외에 다음 수당을 지급한다.<개정 2014.02.25., 2014.03.19.>

- ① 가족수당은 교직원보수규정 제11조(일반수당) 제3항을 따른다.<개정 2014.02.25., 2019.04.17>
- ② 보직수당은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(특별수당) 제1항을 따른다.<개정 2014.02.25.>
- ③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14조(기타수당)를 따른다.<개정 2014.02.25.>
- ④ 급량비는 교직원보수규정 제11조(일반수당) 제5항을 따른다.<신설 2014.02.25.><개정 2014.03.19., 2019.04.17.>
- ⑤ 연구비(50%)는 교직원보수규정 제11조(일반수당) 제4항을 따른다.<신설2014.02.25.><개정 2014.03.19., 2019.04.17.>
- ⑥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이동 2014.03.19.>

제8조 (승진시의 연봉 가산액)

- ① 교원이 연봉계약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에는 가산액을 추가하여 연봉을 재계약 한다.<신설 2020.02.27.>
- ② 승진자는 [별표4]가산액 조건표에 의거 기본급여에 가산한다.<신설 2020.02.27.><개정 2020.07.16.>

제8조의1 (호봉승급 가산) <신설 2020.02.27.>

[별표4] 가산액 조건표에 의거 기본연봉에 가산한다.<개정 2020.07.16.>
단,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만 가산한다.

1. <삭제 2025.03.24.>
2. 등록금수입 대비 보수총액이 65% 미만

제3장 연봉의 지급

제9조 (연봉 지급일)

- ① 연봉은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지급일로 한다.
- ② 월 급여지급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 (연봉의 지급방법) <전문개정 2015.03.31.>

-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총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기타수당을 합산하여 매월 지급한다.
- ② 제1항의 일정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50%씩 명절(설,추석) 에 지급한다
- ③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만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계약체결 후 정산 지급한다.
- ④ 모집정지(학)과 또는 폐과로 인해 수업시수가 없는 교원에게는 강의담당시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학년도 연봉월액의 50%를 지급한다.<신설 2019.01.22.>

제11조 (연봉계산)

신규임용, 퇴직교원의 경우 연봉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계산한다.

제12조 (휴직교원의 처우)

휴직기간 중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전문개정 2014.03.19.>

-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
기본연봉월액의 43%를 지급한다. 단,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월액의 69%를 지급한다.
- ② 전공전환을 위한 휴직
기본연봉월액의 86%를 지급한다.
-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다.

제13조 (해외연수기간중의 급여) <삭제2014.03.19.>

제14조 (정직교원의 처우)

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한다. <신설 2014.03.19.>

제15조 (감봉교원의 처우)

연봉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. <신설 2014.03.19.>

제4장 보 칙

제16조 (보충규정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법인 정관이 정한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.<조문이동 2014.03.19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

조교수는 2013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하고 부교수, 교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02.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03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2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3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1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2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7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3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2.0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)

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제외자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성과급 지급 기준표

등 급	S	A	B	C	D
등급별 인원 배분	10%	25%	35%	25%	5%
성과급지급률(배)	1.4	1.2	1.0	0.8	0.2

[별표 2] 성과연봉 기초 기준금액표

구 분	연구비	연구보조비	합 계
교 수	4,116,000	2,936,000	7,052,000
부 교 수	3,882,000	2,728,000	6,610,000
조 교 수	3,630,000	2,448,000	6,078,000

[별표 3] 성과급 지급 기준금액표

구 분	연구비	연구보조비	특별상여금	합 계
교 수	4,116,000	2,936,000	2,500,000	9,552,000
부 교 수	3,882,000	2,728,000	2,500,000	9,110,000
조 교 수	3,630,000	2,448,000	2,500,000	8,578,000

[별표 4] 가산액 조건표 <신설 2020.02.27.><개정 2020.07.16.>

구 분	가산액	
승진 가산액	조교수 → 부교수	1,500,000
	부교수 → 교수(6년제)	1,800,000
	부교수 → 교수(정년보장)	1,800,000
기본연봉 가산액	조교수	1,000,000
	부교수	1,500,000
	부교수 → 교수(6년제)	1,800,000
	부교수 → 교수(정년보장)	1,800,000

[별표 5] 연봉계약서 <표 윗김 4 → 5 2020.02.27.> <개정 2023.08.29.>

연 봉 계 약 서

0000학년도

소속 :

직급 :

성명 :

1. 지급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(년)

2. 연봉내역

항목	기본연봉(A)	성과연봉(B)	고정성기타수당(C)	총액(D) (D=A+B+C)
금액	원	원	원	원

가. 교원은 상기 연봉내역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절대 누설 하지 않아야함

나. 성과급은 0000학년도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임

다. 고정성 기타수당은 급량비와 연구비의 50%를 합산한 금액임

라. 변동성 기타수당(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보직수당, 직무수당 등)은 별도임

3. 지급시기 및 방법

가. 지급시기 : 좌동

나. 지급방법 : 총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후 12로 나누어 변동성 기타수당을 합산하여 매월지급<개정 2015.03.31.>

다. 공제한 일정금액은 50%씩 명절(설·추석)에 지급<개정 2015.03.31.>

쌍방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총장 이 해 숙

해 전 대 학 교

<직급> <성명>

-